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6. 7.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97. 6. 8.
- 다. 상정일자 : 97. 7. 23 (제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안자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 나. 제안이유
 -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고 주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 다. 주요내용
 - 가. 제명을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로 변경함.
 - 나.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 및 폐기물분리 보관 기준을 정함. (안 제4조)
 - 다.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도록 함.
(안 제6조 제3항)
 - 라. 쓰레기봉투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제2항)
 - 마. 쓰레기봉투 판매인 신청서 처리기한을 15일에서 3일로 단축시킴.
(안 제10조 제3항)
 - 바. 쓰레기봉투 판매인 준수사항 위반시 판매인 지정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제5항)
 - 사. 대형폐기물수수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안 제14조 제1항 3호)
 - 아. 수수료 감면대상자중 반장을 제외함 (안 제16조)

자. 과태료 부과항목 및 금액을 세분화. 구체화함 (안 제18조 별표 4)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민병향)

- 동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부 끝.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7 - 88
------------	---------

제출일자 : 1997. 6. 7.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고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제명을 화순군폐기물조례로 변경함
- 나.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 및 폐기물 분리 보관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다.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함
(안 제6조 제3항)
- 라. 쓰레기봉투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제2항)
- 마.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을 15일에서 3일로 단축시킴
(안 제10조 제3항)
- 바.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준수사항 위반시 판매인 지정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5항)
- 사. 대형폐기물수수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항 3호)
- 아. 수수료 감면대상자종 반장을 제외함 (안 제16조)
- 자. 과태료 부과항목 및 금액을 세분화, 구체화함 (안 제18조 별표4)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집수수료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항, 영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종량제 적용 범위) ① 종량제 적용 범위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관할하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군수가 지정한 계곡,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제4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당해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1.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서 재래식 아궁이등을 이용한 소각처리
 2.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연탄재, 도자기편류등의 매립처리
 3.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처리
 4. 기타 군수가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처리
-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은 종이류, 캔류, 병류 등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마대포대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할 수 있다.

1. 깨진유리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 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③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 ④ 대형폐기물과 제1항의 단서에 규정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술로 신고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시,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등을 미리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⑤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쓰레기봉투의 종류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를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일반용은 녹색, 공공용은 황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제8조 (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7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쓰레기봉투의 판매 및 공급) ①일반용 봉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판매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는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2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공공용 봉투는 읍면장이 공급요청하거나 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리·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한 경우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미화요원등에게 공급한다.

제10조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변경) ①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자는 군수로 부터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등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③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소비자가 구입한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며, 불량봉투는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 방법등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판매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판매인 지정해제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

3. 수집 · 운반 ·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
-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군민의 편의도,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등을 감안하여 쓰레기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 대행업자는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 ⑥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 기간은 연장하여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인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군수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얻어 개인이 설치한 처리시설을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수수료 부과징수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수수료의 부과 · 징수)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 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별표3의 방법으로 산정, 고시한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2.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부과한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 부담정도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고시한 기준으로 부과한다.
-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에는 수거 현장에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 (수수료 납기)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납기는 부과일부터 15일로 한다.

제16조 (수수료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및 이장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 이하로 한다.

제17조 (생활폐기물관리구역외의 수거) 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정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 지역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 하였을 경우에 수수료 부과·징수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준용한다.

제3장 별 칙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에 의한다.

제19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 하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슬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시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서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0조 (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군수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 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 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한 자에게도 이의 신처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과태료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23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4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 장비 노후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처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7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규칙으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 제14조 제1항 1호, 3호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봉투가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제작된 쓰레기봉투와 지정된 쓰레기 봉투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3】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 수수료자립도 + 제작비 + 판매이익

- (주) :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청소차등 수거장비를 활용할 경우의 수거·운반 비용과 매립지 및 소각장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 처리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2. 수수료자립도는 군의 기존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한다.
4. 판매이익은 9%를 적용하며,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 수수료자립도 × 0.09로 산정한다.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표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법 제24조 제5항)	1,000	2,000	3,000
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할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제30조 제3항)	1,000	2,000	3,000
3.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법 제7조)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30	30	3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75	10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50	200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350	50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동법 제26조 폐기물처리업자, 동법 제44조의 2폐기물재생처리를 한 자는 제외)	500	750	1,000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표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4. 생활폐기물을 종류 · 성상별로 분리 ·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2항)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500
○ 생활폐기물을 일반 봉투에 담아 배출한 경우			
○ 타 시군구의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 경우 등			
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500
○ 재활용품에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경우			
○ 쓰레기 및 재활용품 노천소각 행위등			
다.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500
○ 자기집 쓰레기를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 공공봉투에 자기집 쓰레기를 버린 경우			
○ 가로 · 휴지통에 자기집 쓰레기를 버린 경우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표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 재활용품 용기에 쓰레기를 버린 경우등			
라.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0	50	50
5.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6조 제2항)	300	500	1,000
6. 폐기물 관리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24조 제3항, 제41조)	1,000	1,000	1,000
7.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4항)	1,000	1,000	1,000
8. 기술 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법 제30조 제1항)	1,000	1,000	1,000
9.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0	400	500
나. "가" 이외의 교육대상자	300	500	1,000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표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0.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43조 제1항)	300	500	1,000
11. 출입 ·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3조)	1,000	1,000	1,000
1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 제1항)	1,000	1,000	1,000

(주)

-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 영업의 한도 ·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 (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월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판 매 소 위 치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항				
판 매 인 변 경				
판매소위치변경				
변 경 사 유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명)

화 순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	수 수 료
	없 음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본 2. 예정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제 호		쓰레기봉투판매인지정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판매소위치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변 경 내 역

변 경 일 자	변 경 내 용	학 인 원

판 매 상 유 의 사 항

1. 봉투는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 깨끗이 정돈하여 판매하고 판매가격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소비자가 봉투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판매 가격으로 매수하고, 불량 봉투는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유시 봉투를 판매하거나 비치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수신

제 목 : 과태료처분 통지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화수구수 (인)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금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세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고 지 금 액	취소(변경) 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 사유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인)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 서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같		⑤ 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일자		⑦ 과태료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순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는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과태료처분 내역	③ 고지 일자			

첨 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인)